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(1공구)]

- 점검일시 : 2020.09.08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

### 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공기정화시설 #1 축류팬실 격벽 거푸집 조립을 위해 설치한 비계는 격벽과 라이닝 사이 작업 발판으로 진입하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### 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공기정화시설 #1 축류팬실 격벽 작업장에 설치된 비계는 작업발판이 밀실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 우려가 있으니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하고,  
 - 자재 반입 등으로 임시 해체된 안전난간은 재설치하고, 안전난간을 작업 여건상 임시로 해체할 경우 관련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,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안전교육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.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공기정화시설 #1 집수정 굴착 상부에 해체된 안전난간은 추락방지를 위해 재설치바라며, 작업여건 상 해체한 안전시설은 작업완료 후 재설치하도록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공기정화시설 #1 축류팬실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작업장에 설치한 비계는 일부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(설치기준 보다 낮게 설치)한 구간이 있으니 안전난간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비상탈출구 라이닝폼에 설치된 작업발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추락우려가 있으니 작업발판은 외력에 쉽게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비상탈출구 작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목재는 한 줄걸이로 묶여 있어 양중시 짧은 목재 의 탈락, 낙하 우려가 있으니 작은 자재는 자재운반구 또는 항공마대를 이용하여 양중 및 운반 요망.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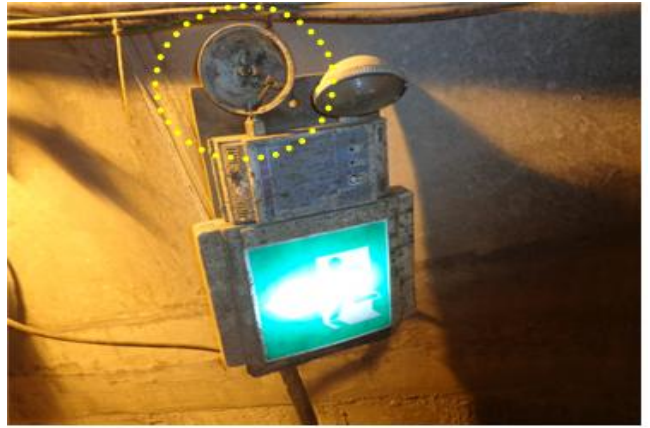
-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는 파손되어 있으니 보완하고 작업대 사용시는 과상승에 의한 협착 방지를 위해 작업대 상부 45cm이상 높이에 2개 이상의 과상승방지장치를 인출하고 작업하도록 관련 작업자 안전교육 바람.  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6(고소작업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비상탈출구 카리프트 앞 비상등은 탈락되어 있으니 견고하게 고정바라며,  
- 공기정화시설 #1 본선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등은 조명등이 파손되어 있으니 항상 비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바람.





○ [모범사례]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작업반경 내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굴삭기에 조명을 설치하여 근로자 충돌 및 협착 재해 예방.

